

www.gonji.ms.kr

"배움과 나눔으로 끼를 찾아 꿈이 자라는 행복한 학교"

가정통신문

발행번호 2021-2호 발 송 일 2021.1.26. 발 송 처 곤지중학교 문의전화 230-2461

제 목

2021학년도 체험학습 규정변경 의견 수렴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, 2021학년도 체험학습(개인, 단체 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) 운영 계획을 도교육청에서 안내함에 따라, 본교의 2021 체험학습 규정 변경을 위하여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하고자합니다.

2021학년도 전주곤지중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전주곤지중학교 학교 규칙」 제4장 제10조에 규정된 체험학습(개인교환학습, 단체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출석인정 일수)

- 1.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(4주),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.
- 2.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,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.
- 3.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 견학, 답사,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, 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,경계'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'가정학습'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.
- 4.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, 필요시 반일(4시간)도 사용할 수 있다. (4시간 2회시 1일로 확산)

제3조(운영절차)

- 1.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.
- 2. 교환학습(개인,단체)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→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→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→ 교환학습 실시→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→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.
- 3. 교외체험학습은 학생·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(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, 경계'단계의 경우 전일)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,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

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. 단,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.

-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
- 4.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,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.

제4조(교외체험학습 형태) 가족동반여행, 친인척 방문, 답사·견학활동,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'심각,경계'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.

제5조(체험학습 불허 사항)

-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
 - 사설학원,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
 -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
-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
- ③ 학년초 1주일간
-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
제6조(미인정 결석 처리)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.

- ①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
-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
-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

위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1월29일까지 전주곤지중학교 교무실 (230-2460)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. 1. 26. 전 주 곤 지 중 학 교 장(직인생략)